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방학제도 근거 마련 >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32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 참고 ····· 9

참고 1. 학자금대출 제도 ····· 9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배현진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

3. 회부연월일 : 2025. 5. 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10(상환) ① ~ ③ (생 략)	제24조의10(상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유예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1]는 일반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10(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2]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원칙적으로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되, 예외적으로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는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을 상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동조 제7항[3]은 ①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등의 사유와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교육부장관 인정하는 아래의 경우 3년간 상환유예
[사망·질병·장애] 부/모 사망, 본인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 질병
[가계곤란]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 보이스피싱·불법사기금융피해자,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기타]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대학생 창업자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

함께, ②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유예 현황 >

구분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상환유예	동 법률상 모든 대출자는 졸업 이후 기준소득 ('25년 2,851만원)발생시까지 유예되나 폐업, 퇴·실직, 육아휴직, 재난지역의 경우 2년간 유예	[사망·질병·장애/가계곤란/기타] 3년간 유예 부·모 사망/본인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중증 질병, 부·모 파산·면책/ 실직·폐업자 군복무 중 연체자 또는 대학생 창업자 등
상환유예 현황	'24년 37,257명 593억원	'24년 6,686명 107억원
이자면제	군복무자, 기초·차상위·다자녀, 5구간이하자, 상환유예자 '24년 430,094명 157억원	군복무자 '24년10,827명 7억원
상환방학 예산추계	**연간 61억원**	**연간 109억원**

자료: 교육부

한편, 일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매해 증가하는 상황

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으로 지난해는 연체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체율도 4년 내 최고 수준인바, 청년들이 학자금 빚을 안고 취업난이 겹치면 자칫 신용불량에 빠지는 청년이 늘 수 있어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4]이 있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현황 >

(단위: 명,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7월말
대출잔액	35,695	35,911	35,828	38,891	40,536
연체잔액	960	835	899	1,091	1,066
연체율	2.69%	2.32%	2.51%	2.81%	2.63%

자료: 한국장학재단

이에 개정안은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과 주거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급여가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아무 조건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상환 방학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출원리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유예만 제공할 뿐이므로 ①유예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상환액은 증가할

4) 뉴시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올해 연체금 벌써 1천억 넘었다, 2024.9.19.

것이라는 점, ②소득에 기반한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학생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인 미봉책에 머무를 것이라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학자금 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1	2022	202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795,345	826,427	791,845
	건수	343,770	359,662	318,489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860,957	808,149	1,080,371
	건수	220,266	202,402	276,700
합계	금액	1,656,30	1,634,576	1,872,216
	건수	564,036	562,064	595,189

자료: 한국장학재단

교육부는 사회초년생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환방학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환 유예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파산, 실직,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 3년 범위 내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는 학자금대출 상환에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

를 방지하고, 대출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간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부처인 국세청 또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도 적용되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상환액 부담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와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동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향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타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

(2025. 5. 현재)

대표 발의의원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현진의원	제22010331호 (2025.5.2.)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함.

문 의 처
02) 6788-5193

□ 참고1. 학자금대출 제도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일반 상환 학자금대출</th><th colspan="2">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th></tr>
<tr><td colspan="2">정의</td><td colspan="2">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td><td colspan="2">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학생이 취업 후 상환 기준소득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td></tr>
<tr><td rowspan="8">신청 대상</td><td>대상</td><td colspan="2">、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td><td colspan="2">、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td></tr>
<tr><td rowspan="2">연령</td><td>공통</td><td>、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td><td>학부</td><td>、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td></tr>
<tr><td></td><td></td><td>대학원</td><td>、만 40세 이하</td></tr>
<tr><td rowspan="3">성적 기준</td><td>학부</td><td>、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td><td>학부</td><td>、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td></tr>
<tr><td>대학원</td><td>、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td><td rowspan="2">대학원</td><td rowspan="2">、제한 없음</td></tr>
<tr><td>학점은행제</td><td>、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td></tr>
<tr><td rowspan="2">소득 기준</td><td>공통</td><td>、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td><td>학부</td><td>、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td></tr>
<tr><td></td><td></td><td>대학원</td><td>、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td></tr>
<tr><td colspan="2">신용 요건</td><td>공통</td><td>、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td><td>공통</td><td>、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td></tr>
<tr><td colspan="2">대출금리</td><td colspan="2">、고정금리(연 1.70%)</td><td colspan="2">、변동금리(연 1.70%)</td></tr>
<tr><td rowspan="4">대출조건</td><td>학부</td><td colspan="2">、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table><tr><th>구분</th><th>총 한도</th></tr><tr><td>대학(전문대학 포함)</td><td>4천만원</td></tr><tr><td>5, 6년제 대학</td><td>6천만원</td></tr><tr><td>의·치의·한의계열</td><td>9천만원</td></tr></table>、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td><td>학부</td><td>、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td></tr>
<tr><td>대학원</td><td colspan="2">、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총 한도</th></tr><tr><td rowspan="2">석사 과정</td><td>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td><td>6천만원</td></tr><tr><td>전문/의·치의·한의계열</td><td>9천만원</td></tr><tr><td rowspan="2">박사 과정*</td><td>일반·특수</td><td>9천만원</td></tr><tr><td>전문/의·치의·한의계열</td><td>1억2천만원</td></tr></table>*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td><td>대학원</td><td>、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총 한도</th></tr><tr><td rowspan="2">석사 과정</td><td>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td><td>6천만원</td></tr><tr><td>전문/의·치의·한의계열</td><td>9천만원</td></tr><tr><td rowspan="2">박사 과정*</td><td>일반·특수</td><td>9천만원</td></tr><tr><td>전문/의·치의·한의계열</td><td>1억2천만원</td></tr></table>*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td></tr>
<tr><td>학점은행제</td><td colspan="2">、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대출기간</td><td>학부
대학원</td><td colspan="2">、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td><td colspan="2" rowspan="2">、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td></tr>
<tr><td>학점은행제</td><td colspan="2">、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td></tr>
<tr><td colspan="2">상환방법</td><td colspan="2">、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td><td colspan="2">、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td></tr>
</table>